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한국방재협회장

1. 신청인

법인명	엘티삼보(주) (대표 이상덕)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80111-*****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문현동) 715호

2. 기술명 : 특수 제작된 응력재 삽입형 워터스탑 블록을 이용한 지하연속벽 이음부 보강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특수 제작된 응력재 삽입형 워터스탑 블록을 이용하여 지하연속벽을 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지하연속벽 패널 이음부에 응력재와 지수재를 설치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차수 및 전단성능을 향상함과 동시에 굴착 가이드를 통하여 수직도를 관리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특수 제작된 워터스탑 블록을 이용하여 지하연속벽 이음부에 응력재를 설치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기술
- 특수 제작된 워터스탑 블록을 이용하여 지하연속벽 이음부에 지수재를 설치하여 차수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 특수 제작된 워터스탑 블록을 이용한 지하연속벽 이음부 형상변화로 전단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 트렌치 커터 바디에 특수 장착된 Key plate를 굴착 가이드로 활용하여 수직도를 관리하고 워터스탑 블록을 분리 및 인발하는 기술

5.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02-6952-9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이해관계인 의견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나. 이해관계인 서약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붙임1 서식)
- 다. 신청서 열람 요청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라. '가'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 자료

7. 제출처 :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02-6952-9388)

※ 이해관계인 의견 반려 사항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